

# 2026년 InnoCORE 연구단(과기원 선도형) 선정 관련 FAQ

Q-1	InnoCORE 연구단(과기원 선도형)에서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나요?
A-1	InnoCORE 연구단(과기원 선도형)에서는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Next 전략기술*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시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실제 연구분야가 여기에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 New, Emerging, eXponential Tech : 차세대·신흥기술 중 미래산업 주도 분야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Q-2	중복되는 분야에서 복수의 지원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적으로 연구단의 조정이 있을 수 있나요?
A-2	자유 공모 사업으로, 중복 분야의 복수 지원서가 접수 되더라도 기관별 혹은 선정과정에서 연구단을 합치는 등의 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Q-3	연구단 발족과 동시에 포닥 정원 임용이 완료되어야 하나요?
A-3	맞습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시에는 실현 가능성있는 상세 임용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4	집단·융합연구비의 15%를 사업단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안서 작성시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최종 연구비가 얼마인가요?
A-4	집단·융합연구비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ex, 집단·융합 인건비가 15억일 경우, 12.75억 원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 사업단은 각 과기원의 연구단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추후 포닥임용·과제관리·네트워킹 행사 등 연구단 공동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비의 15%는 주관 과기원이 활용하되, 그중 일부(연구비의 5% 내외)를 사업단 운영비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Q-5	인건비 계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5	본 사업은 정부 출연금 재원 자체연구사업으로, 각 과기원별 출연금 사업 관련 원규에 따라야 합니다. 협약 과정에서 세부 인건비 계상율을 협약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인건비 계상율이 제안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Q-6	인건비 외 연구개발비 계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Q-7	연구장비도 구입할 수 있나요?
A-7	연구장비는 100만원 미만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해당 장비의 연구 필요성, 활용 계획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0만원 이상 연구장비로 구입 가능) * 100만원 이상 장비 구매 관련 연구책임자 확인서 작성

Q-8	<b>여러 개의 연구단에 중복 지원과 참여가 가능한가요?</b>
A-8	중복 지원 제한은 없으며, 최종 선정 결과 최대 2개의 연구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2개를 초과하여 선정된 경우, 2개 범위 내 참여 연구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 결과 연구단장은 타 연구단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9	<b>3책 5공이 적용되는 사업인가요?</b>
A-9	아닙니다. 본 사업은 4대 과기원의 기본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3책 5공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 연구 과제임을 감안하여, 연구단장이 연구단에 전념하는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시 연구단장의 참여도 및 역할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Q-10	<b>전임직 교원만 연구단장이 될 수 있나요?</b>
A-10	아닙니다. 연구단장은 해당 연구분야에서 연구역량·사업관리역량 등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4대 과기원 소속 전임직/비전임직 교원 및 전임직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Q-11	<b>포닥 세후 연봉이 9천만원인가요?</b>
A-11	아닙니다. 포닥 인건비 9천만원은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질 보수는 9천만원 보다 적습니다.
Q-12	<b>포닥 인건비 단가를 줄여 더 많은 포닥을 임용할 수 있나요?</b>
A-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단 내에서 인건비 단가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으나, 포닥 임용 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포닥 인건비 지급 평균액은 9천만 원 고정)</li> <li>- 인건비 단가 조정은 최우수 인재 유치 등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조정으로 인한 연구단 내 인건비 비대칭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단계(최종)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한편, 연구단의 필요에 따라 타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로 인건비를 매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li> </ul>
Q-13	<b>연구단에 활용되는 포닥은 어느 기관에 소속되나요?</b>
A-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닥은 주관 과학기술원의 메인 멘토 교수의 소속기관과 계약하고, 과기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 멘토인 일반대학 교수와 공동연구를 위해 일반대학과 겸직(파견)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내외 멀티 멘토와의 연구 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단기 파견도 가능합니다.</li> <li>- 과기원 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포닥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li> </ul>
Q-14	<b>현재 계약 중인 포닥을 InnoCORE 사업단의 포닥으로 임용할 수 있나요?</b>
A-14	InnoCORE 사업단의 포닥으로 선정될만한 우수 포닥이라면 임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Q-15	'해외 포닥'은 해당 포닥의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적이 기준인가요?
A-15	해외 소재지 기관에 소속된 내국인·외국인 우수 포닥을 해외 포닥으로 봅니다.
Q-16	멀티멘토로 지정된 해외 석학이 지도하고 있는 우수 포닥을 연구단 포닥으로 임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해외에서 원격으로 연구에 참여해도 되나요?
A-16	해외 포닥은 국내 유치가 원칙입니다. 원격으로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 출장이나 단기 파견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7	2개 이상 과기원이 참여 시 각 과기원별 최소 참여 인원이 있나요?
A-17	2개 이상 과기원 참여는 의무가 아니므로, 최소 참여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과기원의 경우 공동연구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인건비 및 연구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Q-18	타 대학·출연연·기업의 참여 비율 제한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요?
A-18	참여 비율의 제한은 없습니다. 타 대학·출연연·기업은 위탁 또는 용역과제 형태로 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9	산·학·연 및 지자체 등 매칭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한가요?
A-19	그렇습니다.
Q-20	협약 시 참여 연구자 또는 컨소시엄 구성 변경이 가능한가요?
A-20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미한 보완 및 변경은 가능합니다. 선정평가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유로 중요 수행요건(연구단 규모, 연구단장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될 소지가 확인된다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21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이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및 연구 참여가 불가합니다.
Q-22	지원 기간이 마감되어도 이미 제출한 제안서라면 누락된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나요?
A-22	안됩니다. 마감 일시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참여제한 등이 확인되어도 추가 서류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감일 이전까지는 서류 보완 및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Q-23	사업계획서에는 일반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최종 선정 이후 해당 대학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일반대학으로 변경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당초 계획서에 기재한 일반대학의 참여 수만 충족하면 되는지요?
A-23	본 사업은 선정 평가 시 연구단 구성과 협력운영계획의 구체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므로, 사업계획서에는 선정 이후 실제로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 이후 당초 계획서에 기재한 일반대학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일반대학 참여 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 및 연구계획의 연속성·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Q-24	<b>'일반대학'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대학병원도 일반대학에 포함되나요?</b>
A-24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을 의미하며, 대학의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속한 일반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Q-25	<b>일반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 가능할까요?</b>
A-25	전체 사업비 중 포닥 인건비를 제외한 융합연구비의 20% 이상을 일반 대학에 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포닥 파견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포닥을 매개로 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대학 교원이 포닥의 멘토 등 공동연구수행을 하므로 연구비를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Q-26	<b>연구분야가 중복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b>
A-26	자유 공모 사업으로, 중복 분야의 복수 지원서가 접수되더라도 기관별 혹은 선정과정에서 연구단을 합치는 등의 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Q-27	<b>포닥 운영 공간을 제공하나요?</b>
A-27	기관에서 별도 포닥 운영 공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